

목 차

■ 지평 소식 ■

- 이란 사무소 개설.....4
- 이준길 고문 영입.....6
- 김철웅 변호사 영입.....7
- 정진 미국변호사 영입.....8
- 부산 사무소 허지연 변호사 영입.....9
- 박성철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10
- 2015 지평 체육대회 개최.....11
- 공익강연 '난민 - 더 나은 이야기' 개최 外.....12

■ 주요 업무 사례 ■

- KCC를 대리하여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의 지분 인수 자문.....19
-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를 대리하여 베트남 대표법인 설립, 포스코에너지의 출자 및 본점 이전 자문.....20
- 신세계푸드를 대리하여 스무디킹 코리아의 한국 및 베트남 사업권 인수 자문.....21
- 이지글로벌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홈쇼핑업체인 HANA TV HOME SHOPPING (CAMBODIA) Co., Ltd.의 지분 인수 자문.....22
-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CJ대한통운과 미얀마 국영 물류기업인 육상운송청(Road Transport)의 현지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23

■ 법률 논단 ■

- [도산]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의 회생절차상 취급.....24

■ 최신 판례 ■

- [노사관계] 해고의 서면통지 31
- [상법]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대해 약의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37
- [도산] 가처분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파산절차 외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40

■ 최신 법령 ■

- [자본시장] 사모펀드 개편안 시행..... 44

■ 단신 ■

- 구상수 회계사, 마상미 변호사 공저로 '상속전쟁' 출간..... 46
- 김성수 변호사,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外..... 47
- 정광현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49
- 이소영 변호사, 희망제작소 감사로 위촉..... 50
- 박근배 변호사, 대통령경호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外..... 51
- 최승수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주최한 '지식문화중재포럼·동북아중재 포럼'에서 '엔터테인먼트 ADR'을 주제로 강의 外..... 52
- 명한석 변호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법인설립과 투자약정'을 주제로 강의.. 53
- 최진숙, 허성필 변호사, 리츠저널에 '공모형 리츠 활성화 방안' 게재 54
- 배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5년 2학기 '민사기록연습1' 강의 55
- 배성진, 김영수 변호사, 삼성화재 사내 세미나에서 '제조물책임소송 수행 사례 및 실무상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 56
- 이행규 변호사, 세계한인변호사 서울총회 corporate session의 moderator (좌장)로 참여하여 'Global Trends in Private Equity' session 진행 外..... 57
- 정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초청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요 분쟁 유형'을 주제로 건설부 동산법연수원 강의..... 58

- 채희석 변호사, 제5회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에서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 59
- 권순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신규변호사 실무연수강좌에서 '도산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 60
- 이광선 변호사, SK E&S 2015년 하반기 법무워크샵에서 'LSC와 도급(불법파견 이슈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의..... 61
- 손계준 변호사, 경제법판례연구회에서 '전산자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한 허용범위'를 주제로 발표 外..... 62
- 최정규 변호사, '방송협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방송프로그램 협찬 관련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효율적 규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주제로 발표..... 63
- 배지영 변호사, 두바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교류회에서 '이란시장 진출시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 64
- 이해원 변호사,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체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 外..... 65
- 임승혁, 구상수 회계사,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부실과세방지 순회교육에서 각각 '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강의..... 66
- 장성 미얀마 법인장,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한 '2016년 주목해야 할 ASEAN Top 3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미얀마 진출'을 주제로 발표..... 67

■ 지평 소식 ■

이란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로펌 최초로 이란 법률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평은 2015년 11월 4일 테헤란에서 이란의 유력로펌인 Gheidi & Associates('게이디')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란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지평 이란 사무소장은 작년부터 두바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지영 변호사(서울법대, 사법연수원 38기)가 맡고 있습니다. 배변호사는 한국이슬람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이슬람법 전공으로 법학석사를 취득한 중동전문가입니다.

지평이 제휴한 Gheidi & Associates는 유명한 유럽계 및 아랍계 항공사, 한국 대기업을 비롯하여 이란에 진출하려는 대형 외국기업들을 자문하고 있는 이란 유력로펌으로, 대표인 Nasim Gheidi 변호사는 전문성과 고객중심서비스로 장기간 고객들로부터 신망을 쌓아왔습니다.

지평은 이란 사무소와 본사 중동·이란팀이 협력하여, 최근 경제제재 해제를 앞두고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이란 시장에 진출하려는 건설사, 상사, 에너지기업 등 한국기업들에게 이란 현지와 국내에서 동시에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평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8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업무 선두 로펌으로, 이란 사무소는 9번째 해외지사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중동 · 이란팀 변호사 소개]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배지영 변호사 ·
이란 사무소장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지평, 테헤란에 이란사무소 개설(2015. 11. 12.)
- 리걸타임즈 - 지평, 이란에 현지사무소 열어(2015. 11. 11.)
- 한국경제 - [Law&Biz] 지평, 국내 첫 이란 사무소 개설(2015. 11. 10.)
- 매일경제 - 법무법인 지평, 이란 법률시장 진출(2015. 11. 10.)
- 세계일보 - 법무법인 지평, 이란에 해외사무소 개설(2015. 11. 10.)
- 뉴스토마토 - 법무법인 지평, 국내 최초 이란 사무소 개소(2015. 11. 10.)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한국 로펌 최초로 이란사무소 개설(2015. 11. 10.)

[관련 사진]



좌로부터 지평 배지영 변호사,
Nasim Gheidi 대표변호사,
지평 양영태 대표변호사와 이훈 미국변호사

■ 지평 소식 ■

이준길 고문 영입



(법무법인 지평 **이준길 고문**)

지평은 지난 11월 2일 공정거래팀에 이준길 고문을 영입하였습니다.

이준길 고문은 제36회 행정고시(법무행정 1기)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행정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약 14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다 약관심사과장을 마지막으로 두산그룹 법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산그룹에서 9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계열사간 내부거래, M&A, 카르텔, 하도급거래,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 이슈를 총괄하였고, 동반성장지원팀장을 겸임하여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및 각종 지원활동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김철웅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김철웅 변호사**)

지평은 지난 11월 9일 김철웅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철웅 변호사는 본사 근무 후 캄보디아 사무소에 파견근무 예정입니다.

■ 지평 소식 ■

정진 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정진 미국변호사](#))

지평은 2015년 9월 정진 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정진 미국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14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Washington DC 소재 로펌에서 민, 형사 소송업무를 수

행한 바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부산 사무소 허지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허지연 변호사](#))

지평은 부산 사무소는 지난 10월 1일 허지연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허지연 변호사는 일반적인 소송과 자문 업무는 물론 중국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박성철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가 2015년 11월 영국 런던대학교(QMUL)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박성철 변호사는 소송 변호사로서 복잡한 소송과 중재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건설·부동산 산업계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며 각종 정부규제 분야의 헌법·행정소송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2015 지평 체육대회 개최

지평은 10월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전체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한 '2015 지평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같이 놀자! 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림보, 바구니에 공넣기,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애물 달리기, 줄다리기 등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합을 다졌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공익강연 '난민 - 더 나은 이야기' 개최

지평은 지난 9월 24일 난민법 전문가인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난민 - 더 나은 이야기'를 주제로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난민 지위 인정의 필요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필의 노력 등 난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4,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있고, 이중 절반이 여성과 아이라고 합니다. 이날 공익강연은 지평이 이들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경복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

지평은 지난 8월 21일과 29일, 10월 28일과 29일에 경복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지평 구성원 37명이 참여하여,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경복궁 근정전부터 경회루까지 현장순찰 및 관람객 질서유지, 동선안내, 문화재보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활동

지평은 지난 9월 5일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빵을 경성교회, 능곡침례교회, 산마루교회, 의정부하늘샘교회, 서기대외국인유학생, 연희동, 남가좌동, 흥은동 이웃들 등 나눔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지평은 매월 1회 '제빵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2015 지평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 구성원 31명은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충북 제천시 덕산면으로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올해에는 더덕을 캐고 나르는 일을 도왔는데, 몸은 비록 고되었지만, 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우면서 마음을 넉넉히 채워갈 수 있었던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덕산면에는 마을 공동체 복원을 꿈꾸는 분들이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하여 덕산포럼, 마을 어린이집, 누리마을 빵카페 등 다양한 농촌공동체 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마친 후에 농촌공동체연구소 한석주 소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 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평은 2012년부터 농촌봉사활동을 4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하는 겨레얼학교 탁구대회

지평은 지난 11월 7일 목동의 탁구클럽에서 '지평과 함께하는 겨레얼학교 탁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겨레얼학교는 저소득층 탈북청소년들과 탈북 2세 아동들을 지원하며, 지평은 2011년 학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제9회 여성인권영화제 후원

지평은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제9회 여성인권영화제의 후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인권영화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6년에 시작된 영화제입니다.

■ 지평 소식 ■

2015 지평 공익의 날, 두루 창립 기념행사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9월 1일 지평 공익의 날과 두루 창립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의 공익활동을 되짚어 보는 '지평-두루 뉴스'를 상영하고 '지평-두루 공익토크쇼'를 마련하여 공익의 의미와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루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사진]

■ 주요 업무 사례 ■

KCC를 대리하여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의 지분 인수 자문

지평은 미국의 유명 카지노 업체인 '모히건 선'과 함께 인천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사업에 진출하기로 한 KCC를 대리하여 '모히건 선'의 투자 업체인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의 지분을 인수하는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서울경제 - KCC, 美 업체와 손잡고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2015. 11. 21.)
- 머니투데이 - KCC, 모히건선과 손잡고 카지노복합리조트 투자(2015. 11. 20.)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이승수 변호사



정선열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임승혁 공인회계사

■ 주요 업무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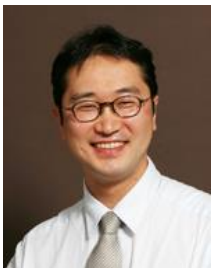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를 대리하여 베트남 대표법인 설립, 포스코에너지의 출자 및 본점 이전 자문

지평은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를 대리하여 베트남 대표법인 설립, 포스코에너지의 출자 및 본점 이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더벨 - 포스코 베트남 대표법인 설립, 포스코에너지 동참\(2015. 7. 13.\)](#)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유동호 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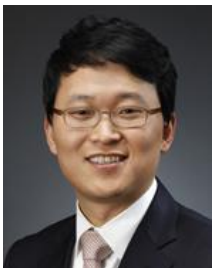
신세계푸드를 대리하여 스무디킹 코리아의 한국 및 베트남 사업권 인수 자문

지평은 신세계푸드를 대리하여 스무디킹 코리아의 한국 및 베트남 사업권을 인수하는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신세계, 한국·베트남 스무디킹 인수(2015. 10. 9.)
- 매일경제 - 신세계푸드, 스무디킹코리아 지분인수 계약 체결(2015. 10. 8.)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이승수 변호사



정선열 변호사



박종완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이지글로벌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홈쇼핑업체인 HANA TV HOME SHOPPING (CAMBODIA) Co., Ltd.의 지분 인수 자문

지평은 이지글로벌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홈쇼핑업체인 HANA TV HOME SHOPPING (CAMBODIA) Co., Ltd.의 지분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CJ대한통운과 미얀마 국영 물류기업인 육상운송청(Road Transport)의 현지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

지평 미얀마팀은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CJ대한통운과 미얀마 국영 물류기업인 육상운송청(Road Transport, RT)의 현지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경제 - CJ대한통운, 미얀마 국영물류기업과 합작법인 설립\(2015. 11. 5.\)](#)
- [파이낸셜뉴스 - CJ대한통운, 미얀마 현지법인 본격 운영\(2015. 11. 5.\)](#)
- [머니투데이 - 대한통운, 미얀마 물류시장 공략 본격화...합작법인 출범\(2015. 11. 5.\)](#)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장성 수석자문위원

■ 법률 논단 ■

[도산]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의 회생절차상 취급



(법무법인 지평 배성진 변호사)

1. 들어가며

건설회사 등의 PF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시행사의 관계회사나 해당 PF사업의 시공사 등)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용보강의 수단은 '채무인수약정'과 '자금보충약정'으로 대별되며,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신용보강의 주체(자금보충자)가 차주 또는 대주에게 자금보충금을 대여하고 후순위로 상환받는 구조의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이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대주가 자금보충의 상대방이 되는 구조의 경우, 통상 대주는 SPC 형태로 설립되고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을 통해 대여자금을 조달하여 차주에게 대출을 제공하게 되는데, 일정한 자금보충 사유가 발생하면 자금보충자가 대주에게 자금보충금을 대여하며, 대주는 차주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거나 대주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 등의 채무를 전부 변제한 이후에 해당 자금보충금을 자금보충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이 체결됩니다. 이처럼 대주가 자금보충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기는 하지만, 대주는 차주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그에 대한 담보 이외에는 별도의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SPC이고, 또한 상환의 조건 또는 기한이 위와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PF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이외에는 자금보충금 상환자금의 재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자의 채무는 차주를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자금보충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대주가 갖는 자금보충금 채권에 관해서

는 “해당 자금보충약정이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로 다투어져 왔고, 회생법원은 대체로 전체 PF사업 구조 및 자금보충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자금보충약정이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성 요건을 인정하여 부인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30.자 2014회확79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최근 법원은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의 형식에 착목하여 위 약정을 ‘후순위 상환조건부 금전소비대차(대여)계약’으로 파악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가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5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030402 판결, 이하 ‘대상 판결’). 이 글에서는 대상 판결의 요지와 그 의미, 거래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와 의미

가. 대상 판결의 요지

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적용을 받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자금보충약정에 따르면, 자금보충자가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상당을 보충해 주면 그와 동시에 대주는 자금보충자에 대하여 그 보충액 및 약정이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다만, 자금보충자는 기업어음 소지인 등 대주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후순위로 대주로부터 변제받게 되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이는 법률행위의 형식이나 실질 면에서 모두 ‘대여(금전소비대차)’로서의 요건 및 성질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금보충약정은 ‘후순위 상환조건부 금전소비대차(대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무이자 소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부담하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야 할 채무와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그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견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대주는 자금보충자에게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금보충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대주도 자금보충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 없으므로, 자금보충자의 자금보충의무와 대주의 이자지급 의무는 자금보충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전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나. 대상 판결의 의미

대상 판결과 같이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이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게 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자금보충자의 관리인은 해당 자금보충약정의 이행 또는 해제(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거래계에서는 자금보충약정이 보증 유사의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자금보충자의 관리인은 자금보충약정이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도 위와 같은 해제(지)권이 행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금보충자의 관리인은 자금보충약정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주의 자금보충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대상 판결의 법리가 확립될 경우, 자금보충자의 관리인은 앞으로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에 대해 당연히 해제(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그 경우 대주는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자금보충약정의 해제(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과연 대주가 자금보충약정 해제(지)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상 판결의 논리를 일관할 경우 대주는 비록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자금보충금을 자금보충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대주가 입는 손해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대상 판결에 따른 경우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은 자금보충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신용보강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3. 대상 판결에 대한 평가

대상 판결은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의 형식을 중시하여 위 약정을 쌍무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계약관계의 실질을 외면하고, 채무자회생법상 쌍무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도외시한 판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 자금보충약정의 실질

대개의 경우 대주는 PF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SPC로서 자금조달의 매개체(vehicle)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SPC는 근소한 자본금으로 설립되고, 설립목적 자체가 "PF사업의 시행자인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취득하는 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로 제한됩니다. 대주SPC의 자산은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밖에 없고, 부채는 위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원리금 등 반환의무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에서 대주는 차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받거나 또는 대여자

금 조달을 위해 부담한 대주의 채무가 완제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금보충자에게 자금보충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대출채무를 전부 상환하지 않는 이상 자금보충자가 대주에게 자금보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주에게는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보충자는 차주가 대주에게 변제하는 자금 외에 대주의 다른 책임재산으로부터 자금보충금 상환청구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 구조에서 확인되듯이, 자금보충자의 대주에 대한 자금보충금 상환청구권은 대주의 자력을 기초로 한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며, 해당 PF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등이 대주라는 매개체(vehicle)를 거쳐 자금보충자에게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의 '법률적 외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자금보충자가 대주에게 갖는 자금보충금 상환청구권은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채무 이행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보충약정의 실질적 기능,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시할 경우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보증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자금보충약정의 쌍무계약성

(1) 채무자회생법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에게 해제·해지 또는 이행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관리인이 해제·해지/이행을 선택한 각 경우별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쌍무계약의 경우 쌍방의 권리가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대신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등 참조).

(2) 대상 판결은 자금보충자가 대주에 대해 부담하는 자금보충금 지급의무와 대주의 자금보충자에 대한 자금보충금 이자지급 의무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주의 이자지급 의무는 대주의 독자적인 책임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이행될 것이 기대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주가 대출채무를 완제하지 않는 이상 자금보충자는 이자는 물론이고 자금보충금 원금의 상환조차 대주에게 청구할 수 없고, 대주는 자본금이 지극히 근소하고 다른 고유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SPC에 불과하여 자금보충금에 대한 이자는 어차피 PF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로 차주가 대주에게 변제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체결된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자금보충자가 "대주로부터 자금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위 이자가 자금보충의무와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3) 자금보충자의 자금보충금 상환청구권(이자 포함)은 차주가 대주에게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생합니다. 즉, 자금보충자는 대주에게 자금보충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차주가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이상 대주에게 자금보충금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이자를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차주가 PF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대주는 그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보충자에게 자금보충금 원리금 상환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자금보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은 차주가 PF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금보충금에 대한 이자'라는 급부는 "대주가 자금보충약정의 대가로 자금보충자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양자 사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19조가 규율하고자 하는 '쌍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습니다.

다. 당사자들의 의사

자금보충약정의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위 약정의 실질을 보증계약이라고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에 바탕하여 행동해 왔습니다. 회생채권 조사절차에서도 자금보충자의 관리인은 대주의 자

금보충금 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자발적으로 등재하고, 해당 약정이 회생절차개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경우에만 부인권을 행사하였을 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서도 자금보충금 채권은 '보증채권'에 준하여 변제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보충약정은 자금보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금보충인이 확정적으로 잔존 대출 원리금 상당의 자금을 보충해 줄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체결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계약상 의무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틀 안에 들어와 관리인이 임의로 해제(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4. 결론

대상 판결이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확정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약정의 형식만을 중시하여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선언하는 것이 과연 사법기능의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대상 판결의 법리가 확립될 경우, 거래계에서 더 이상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대상 판결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신 판례 ■

[노사관계] 해고의 서면통지¹

이광선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제17조 제2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서면으로 촉구하고 서면통보를 해야 하며(제61조), 18세 미만자와의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고(제67조 제3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제51조, 제52조).

그중에서 해고통지시 서면 통보와 관련하여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보한 것이 유효한지와 관련해서는 하급심 판례와 행정해석이 분분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이하 '이 사건 판결').²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무조건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과연 이 사건 판결의 취지가 무조건적으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를 유효하게 보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해고의 서면통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해고통지의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

¹ 본 원고는 노동법률 1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²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조 제1항). 원칙적으로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통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등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가능합니다.³

그런데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해고시점, 해고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⁴

해고사유를 명시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는 해고사유를 명시하면서 '근무성적 불량 및 지시불이행 등'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성적이 불량한지, 어떤 행위가 지시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⁵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⁶ 즉, 이 판결에서는 (i) 근로자가 이해할 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ii)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비위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해고통

³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⁴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⁵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1나73719 판결

⁶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지의 2가지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예를 들어, 언제 어떠한 행위가 취업규칙 무슨 규정을 위반했음)되어야 하고, 단순히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한편,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즉, 해고사유 통지에만 신경을 쓰다가 언제부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유효성

가. 과거 판례

과거 하급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이란 종으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⁷ 다만, 그 판결에서도 이메일은 전자결재 체제가 완비된 회사의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참가인이 업무연락 수단으로 이메일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기술적 이유 등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하급심 판례는 해외에 있는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사실을 통지하면서 해고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사안에서, 이메일은 의사연락의 수단이자 해고의 의사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이러한 해고통지를 '서면통지'로 판단하였

⁷ 서울행정법원 2010. 6. 18. 선고 2010구합11269 판결

습니다.⁸ 이 판결에서는 이메일이 의사연락의 수단일 뿐이고 이메일에 첨부된 인사위원회 의결 통보서가 서면통지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메일 자체가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이 사건 판결

(1)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의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 다음과 같은 점(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 제1항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동일하여 저장과 보관에서 있어서 지속성과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의 형식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들을 고려하고 ②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③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④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보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구체적인 사정으로 ① 근로자가 징계위

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2974 판결.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279 판결).

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통보받고 소명기회를 가진 점, ② 회사가 징계위원회 의 결정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게 부당해고에 대해 다룰 것이니 관련 자료 일체를 담당 노무사에게 보내라고 요청한 점, ④ 회사는 해당 노무사에게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를 복사한 파일 및 관련자료를 발송하였고, 노무사에게 전화하여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한 점, ⑤ 근로자가 위 노무사로부터 징계결과통보서의 내용을 전달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에 대응한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판결의 취지

이 사건 판결은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를 유효하게 본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를 유효하게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메일의 내용에서 사용자의 해고의사(해고사유,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이메일 수신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앞으로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무조건 유효하다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거나 서면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불명이거나 해외 근무 등으로 서면통지가 어려울 경우라면,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보내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4. 인사노무담당자가 유의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은 무조건적으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선불리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하기 보다는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소지 불명이나 해외 근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해고의 서면통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통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하고, 이메일 발송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이메일을 확인하도록 하되, 증거 확보를 위해 이메일의 수신확인 기능이 있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거나 녹취록 등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의 방법은 특별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서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의 차원에서 해고예고도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 뿐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그러므로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명시하면 1번의 통지만으로 해고예고와 해고통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신 판례 ■

[상법]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대해 악의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철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1999년 4월 2일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A회사 발행 지분을 양수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A회사는 본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에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혐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 및 보증을 하였음.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피고가 진술 및 보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

그런데, 원고 및 A회사를 비롯한 다른 정유사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균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였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A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이후 대한민국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이유로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진술 및 보증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

2. 쟁점

원고 역시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한 자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알고 있었던 자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진술 및 보증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3. 원심(고등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했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위반사실을 가격산정에 반영하였거나 또는 충분히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원고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뒤늦게 피고에게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약의의 주식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4. 상고심(대법원)의 최종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함.

- 처분문서의 계약서의 내용을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음.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 및 보증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원고가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되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실행일 이후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A회사에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5. 해설

동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 하급심 판결은 (i) 악의의 매수인은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1가합22721 판결 등)과 (ii) 매수인이 악의인지 여부는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0가합12420 판결)이 대립하는 등 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국내의 학설도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와 매수인이 악의인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술 및 보증조항이 발전해온 미국의 학설은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주된 기능이 위험분배 및 가격조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악의의 매수인도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 대법원 판결도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험분배 및 가격조정 기능을 판결에 이른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만큼, 이후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시키고자 하는 매도인은 반드시 주식양수도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만큼, 매수인으로서도 알고 있는 진술 및 보증사항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한을 확실히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 최신 판례 ■

[도산] 가처분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파산절차 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배성진 변호사 | 이강호 변호사

1.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는 A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5588호)함. 위 법원은 2011년 12월 5일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경로됨(이하 '이 사건 가처분').

원고는 2012년 1월 5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0399호)을 하였고, 2012년 2월 22일 위 법원으로부터 갑 주식회사가 담보로 현금 7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갑 주식회사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함.

갑 주식회사는 2012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갑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제1심에서 2012년 7월 26일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제2심에서 2013년 1월 11일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로 2013년 2월 14일 이 사건 가처분등기도 말소됨.

원고는 "갑 주식회사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에 따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동안의 임대 지연으로 인하여 관리비를 지출하며 월 차임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2월 6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2. 쟁점

-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3. 판시사항

-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해설

먼저 갑 주식회사가 가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은 동법에 규정된 담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등을 준용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에는 담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전 등을 공탁(供託)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민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3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그래서 대상판결은 앞서 본 법률규정에 따라 가처분채무자인 원고가 갑 주식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의 지위에 있고,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갑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파산절차 외에서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앞서 말씀드린 파산절차 외에서의 권리행사로써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살피건대, 원고의 갑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파산선고 전 있었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의 소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위 소는 파산절차 외에서의 권리행사로 판단됩니다. 대상판결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파산절차 내에서 별제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의 액 및 예정부족액을 신고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인부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 2항).

한편, 대상판결은 원고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질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제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가처분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일단 파산채권을 신고한 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 외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가처분채무자의 채권액이 공탁금보다 크다면 파산절차 내에서 부족채권액을 소명(중간배당 시) 또는 증명(최종배당 시)하여 배당을 받음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사모펀드 개편안 시행

채희석 변호사

1. 주요 내용

2015년 10월 25일부터 사모펀드와 관련된 제도의 전반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지평 뉴스레터 8월호 \[최신법령 - 자본시장\]](#) 참조).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잇달아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과 3억 원으로 설정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요건

자본금 20억 원, 전문인력 3인 등 일부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현행 투자일임·자문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3) 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

사모펀드의 보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보고 주기도 매분기에서 펀드 규모에 따라 반기·연간 보고로 완화

(4)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 (안 제271조의14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기업의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

(5) 해외투자목적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 완화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같은 기업집단소속 금융회사 출자제한 규제 면제

(6) 거래소 손해배상 총담금 자원 순서 변경(안 제362조)

거래소 회원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총담할 자원의 순서를 위약한 회원의 공동기금, 거래소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순으로 함

나.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규정 : 등록신청서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서 흠결 등을 보완하는 기간 등은 2개월의 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

2. 다운로드 :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단신 ■

구상수 회계사, 마상미 변호사 공저로 '상속전쟁' 출간



(법무법인 지평 구상수 회계사, 마상미 변호사)

상속·가사팀 구상수 회계사, 마상미 변호사는 지난 10월 23일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다룬 '상속전쟁'을 출간하였습니다. '상속전쟁'은 상속 절차와 용어 소개 등 기초 지식뿐 아니라 상속·증여와 관련된 77가지 사례를 소개하여 일

반인들이 상속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Law&Biz] "상속 분쟁, 부유층만의 문제 아냐"(2015. 11. 4.)
- 머니투데이 - 교통사고 당한 5억 재산의 부부 두쌍, 자식이 낸 상속세가 달랐던 이유(2015. 10. 29.)
-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지평 상속·가사팀 '상속전쟁' 출간(2015. 10. 24.)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상속·가사팀, '상속전쟁' 출간 눈길(2015. 10. 23.)
- 머니위크 - [BOOK] 상속전쟁 外(2015. 10. 24.)
- 조선비즈 - [신간 소개] 내가 걷는 이유 外(2015. 10. 24.)
- 기호일보 - 상속전쟁 外(2015. 11. 5.)

■ 단신 ■

김성수 변호사,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담뱃갑의 경고그림에 관련된 주제 선정 등 제도 시행방안을 심의합니다.

[관련 기사]

- [뉴스1 - 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논의 돌입...12명 위원회 구성\(2015. 10. 29.\)](#)
- [메디칼타임즈 - 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첫 개최\(2015. 10. 29.\)](#)

김성수 변호사, 경기소방학교에서 주관한 제10기 소방법령과정에서 '법령의 체계'를 주제로 강의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1월 19일 경기소방학교에서 열린 제10기 소방법령과정 전문교육에 참가하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령의 체계'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시 고문변호사로 다수의 소방 관련 소송사건을 수행하였고, 2012년부터 경기소방학교의 정기 소방교육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한 '의료인 폭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료인 상대 폭행 규제법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한 '의료인 폭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료인 상대 폭행 규제법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청년의사 - 응급실폭행방지법 있으나마나?...“일반인 응급실 폭행 더 늘어”\(2015. 10. 15.\)](#)

■ 단신 ■

정광현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정광현 변호사)

정광현 변호사는 지난 9월 1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 입니다.

■ 단신 ■

이소영 변호사, 희망제작소 감사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이소영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희망제작소 감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 단신 ■

박근배 변호사, 대통령경호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박근배 변호사](#))

박근배 변호사는 지난 9월 16일 대통령경호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박근배 변호사, KBS 공감토론(KBS 1Radio)에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군사법 개혁방안에 대해 토론

박근배 변호사는 지난 11월 3일 KBS 공감토론(KBS 1Radio)에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군사법 개혁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 단신 ■

최승수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주최한 '지식문화중재포럼·동북아중재포럼'에서 '엔터테인먼트 ADR'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10월 30일 대한중재인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주최한 '지식문화중재포럼·동북아중재포럼'에서 '엔터테인먼트 ADR'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5 분쟁조정 콘퍼런스'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분쟁조정 사례로 보는 ADR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2015 분쟁조정 콘퍼런스'에서 '대중문화 예술인 분쟁조정 사례로 보는 ADR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한콘진, 콘텐츠 분쟁조정 콘퍼런스 오는 5일 개최\(2015. 11. 2.\)](#)

최승수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저작권 아카데미에서 '음악저작권 판례 연구'를 주제로 강의

최승수 변호사님이 지난 11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저작권 아카데미'에서 '음악저작권 판례 연구'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명한석 변호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법인설립과 투자약정'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명한석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는 지난 10월 28일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법인설립과 투자약정'을 주제로 법률교육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루트임팩트와 지난 8월, 사회혁신가들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 단신 ■

최진숙, 허성필 변호사, 리츠저널에 '공모형 리츠 활성화 방안' 게재



(법무법인 지평 최진숙 변호사, 허성필 변호사)

최진숙, 허성필 변호사님이 함께 작성한 '공모형 리츠 활성화 방안'이 한국리츠협회에서 발간하는 리츠저널 2015년 봄호(통권15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 [리츠저널\(2015년 봄호\) - 공모형 리츠 활성화 방안](#)

■ 단신 ■

배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5년 2학기 '민사기록연습1' 강의



(법무법인 지평 [배성진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5년 2학기 '민사기록연습1'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신 ■

배성진, 김영수 변호사, 삼성화재 사내 세미나에서 '제조물책임소송 수행 사례 및 실무상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배성진, 김영수 변호사)

배성진, 김영수 변호사는 지난 9월 22일 삼성화재 사내 세미나에서 '제조물책임소송 수행 사례 및 실무상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단신 ■

이행규 변호사, 세계한인변호사 서울총회 corporate session의 moderator (좌장)로 참여하여 'Global Trends in Private Equity' session 진행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9월 18일 세계한인변호사 서울총회 corporate session의 moderator(좌장)로 참여하여 'Global Trends in Private Equity' session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행규 변호사, 이화여대 산한협력단이 법무부 용역을 발주 받아 주관하는 주관하는 '한국형 법제정비지원모델 구축방안 연구' 중간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9월 8일 이화여대 산한협력단이 법무부 용역을 발주 받아 주관하는 '한국형 법제정비지원모델 구축방안 연구' 중간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단신 ■

정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초청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요 분쟁 유형'을 주제로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의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

정원 변호사는 지난 10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초청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요 분쟁 유형'을 주제로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채희석 변호사, 제5회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에서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채희석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는 지난 11월 9일 부산국제교류재단 한-러협력센터에서 진행된 제5회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에서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뉴시스](#) - 부산국제교류재단, '극동러시아 최신 경제동향'포럼(2015. 11. 8.)
- [서울경제](#) - 9일 부산서 '제5회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 열려(2015. 11. 6.)
- [한국일보](#) -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 개최(2015. 11. 8.)

■ 단신 ■

권순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신규변호사 실무연수강좌에서 '도산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권순철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는 지난 11월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신규변호사 실무연수강좌에서 '도산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이광선 변호사, SK E&S 2015년 하반기 법무워크샵에서 'LSC와 도급(불법파견 이슈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는 지난 11월 20일 SK E&S 2015년 하반기 법무워크샵에서 'LSC와 도급(불법파견 이슈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손계준 변호사, 경제법판례연구회에서 '전산자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한 허용범위'를 주제로 발표(법무법인 지평 **손계준 변호사**)

손계준 변호사는 지난 11월 2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경제법판례연구회에서 '전산자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한 허용범위'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손계준 변호사,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심화과정 사례중심 하도급법'을 주제로 강의

손계준 변호사는 지난 11월 12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심화과정 사례중심 하도급법'을 주제로 강의 하였습니다.

■ 단신 ■

최정규 변호사, '방송협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방송 프로그램 협찬 관련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효율적 규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1월 20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방송협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방송프로그램 협찬 관련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효율적 규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단신 ■

배지영 변호사, 두바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교류회에서 '이란시장 진출시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는 지난 11월 17일 두바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교류회에서 '이란시장 진출시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단신 ■

이해원 변호사,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체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이해원 변호사](#))

이해원 변호사는 지난 9월 4일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체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해원 변호사, 목포대학교 법학과 정보통신법 전문과 양성과정에서 '정보통신분야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제로 특강

이해원 변호사는 지난 11월 12일 목포대학교 법학과 정보통신법 전문과 양성과정에서 '정보통신분야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임승혁, 구상수 회계사,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부실과세방지 순회교육에서 각각 '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임승혁, 구상수 회계사)

임승혁, 구상수 회계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부실과세방지 순회교육에서 각각 '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장성 미얀마 법인장,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한 '2016년 주목해야 할 ASEAN Top 3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미얀마 진출'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장성 미얀마 법인장)

장성 미얀마 법인장은 지난 11월 1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한 '2016년 주목해야 할 ASEAN Top 3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미얀마 진출'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내년 주목할 해외시장은 VIM"(2015. 11. 18.)
- 조선비즈 - 무협 "내년 VIM(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을 주목하라"(2015. 11. 17.)
- 국민일보 - "내년 VIM<베트남·인니·미얀마> 3국 주목하라"(2015. 11. 17.)
- 시사저널 - 무역협회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 성장성 높아 주목해야"(2015. 11. 17.)